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,도로교통법위반

[대법원, 1993.6.22, 93오1]

【판시사항】

구류형을 선고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
【판결요지】

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,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같은 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,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인 경우에 한하고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.

【참조조문】

형법 제59조 제1항
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

【비상상고인】 검찰총장

【공판관여검사】 검찰총장 대리 검사 정경식

【원즉결심판】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2조283, 93조324, 93조517, 93조612

【주문】

】 각 원즉결심판 중 피고인들에 대한 구류형의 선고를 유예한 부분을 파기한다.

【이유】

】 기록에 의하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이 1993.4.5.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즉결심판 청구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구류 3일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즉결심판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각 즉결심판이 확정된 것이 명백하다.

그러나 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, 위 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구류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음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비상상고는 이유 있다.

그러므로 위 각 원즉결심판 중 형법 제5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구류형의 선고를 유예한 법령위반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대법관 김주한(재판장) 대법관 윤관 대법관 김용준 대법관 천경송(주심)